

시가-담배포장간소화법 2011(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침

시가 포장

질문 1. 시가 제품이 합법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경우 제가 다시 포장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판매 또는 판촉, 공급의 목적으로 사용할 담배 제품이 합법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합법적 포장물을 사용하여 재포장해야 합니다.

포장물(시가 포장백 포함)은 반드시 팬톤 448C(Pantone 448C)라고 불리는 무미건조하고 어두운 무광택 갈색이어야 하며 보건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2. 합법적인 포장물을 어디서 구하나요?

귀하가 소매업자인 경우 귀하의 공급자/수입자/제조자에 문의하십시오. 귀하가 공급자/수입자/제조자인 경우, 직접 합법적인 포장과 인쇄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3. 시가를 낱개 판매 시에도 포장 간소화가 되어야 하나요?

네, 낱개 시가들도 반드시 합법적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아래 질문 5 참조)

포장물(시가 포장백 포함)은 반드시 팬톤 448C(Pantone 448C)라고 불리는 무미건조하고 어두운 무광택 갈색이어야 하며 보건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시가 공급자들은 법령 준수를 위해 충분한 양의 시가 포장백 또는 기타 합법적 포장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낱개 시가는 무미건조하고 어두운 갈색(Pantone 448C)의 밴드를 두르고,
「담배포장간소화법 2011」에서 허가된 특정 무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판매시 합법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담배 제품을 합법적인 포장백(또는 기타 합법적인 용기)에 넣어도 되나요? (예: 비합법적으로 포장된 담배 또는 시가, 말아 피는 담배의 주머니 및 쥘통을 합법적인 지퍼백에 넣음)

아니오. 비합법적으로 포장된 담배 제품은 판매 또는 판촉, 공급하기 전에 반드시 합법적인 포장물로 재포장되어야 합니다.

질문 5. 잠재 고객에게 비합법적으로 포장된 담배를 보여줘도 되나요?

아니오. 포장되지 않은 담배나 합법적으로 포장된 담배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판매 전에는 반드시 보건경고가 표시된 합법적인 포장물로 포장되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유의: 본 정보는 안내용으로만 제공된 정보이며 법적 자문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여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담배포장간소화법 2011」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포장간소화규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귀하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나 요건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민간 법적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시가 밴드

질문 6. 시가 밴드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시가는 무미건조하고 어두운 갈색(Pantone 448C)의 밴드를 두르고, 「담배포장간소화법 2011」에서 허가된 특정 무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무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배포장간소화법 2011」 제 26 장) 비합법적인 밴드는 제거하거나 합법적인 포장 간소화형의 접착형 밴드를 위에 다시 붙여야 합니다. 합법적 접착형 밴드는 반드시 비합법적 밴드의 전체를 가리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여져야 합니다.

기타 정보

질문 7. 포장 간소화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담배포장간소화법 2011」 제 18 장에서 26 장과 「담배포장간소화규정 2011」 2.1.3 부터 2.6.3 과 3.2.1, 3.2.2 규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담배 공급자를 위한 정보

담배 제품의 공급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귀하의 의무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 웹사이트: www.health.gov.au/tobaccopp and www.productsafety.gov.au
- www.comlaw.gov.au 의 「담배포장간소화법 2011」과 「담배포장간소화규정 2011」
- www.comlaw.gov.au 의 「경쟁및소비자(담배)정보표준 2011」
- 사진 및 보건경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인포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 전화번호 1300 302 502
- 포장 간소화와 관련된 특정 문의사항(사진과 보건경고를 제외한)은 포장간소화 정보 안내로 문의하십시오 - 전화번호 1800 062 971 또는 이메일 ppcomplaints@health.gov.au.

유의: 본 정보는 안내용으로만 제공된 정보이며 법적 자문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여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담배포장간소화법 2011」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포장간소화규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귀하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나 요건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민간 법적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